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- 572 호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

행정예고

2023. 12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- 572 호

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73호, 2023. 11. 30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 월 7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「화장품법」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(안 별표 1)

1,2,4-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

3. 의견 제출

이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

23년 12 월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
(참조: 화장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
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
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
정책과
- 전자우편: mfdscos@korea.kr
- 전화: 043-719-3410, 팩스: 043-719-3400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트리플루페리돌란 다음에 1,2,4-트리하이드록시벤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,2,4-트리하이드록시벤젠	533-73-3	
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)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·수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1] 사용할 수 없는 원료			[별표 1] 사용할 수 없는 원료		
<u>원료명</u>	CAS No.	화학물질명	<u>원료명</u>	CAS No.	화학물질명
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
트리플루페리돌	749-13-3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<신설>	<신설>		<u>1,2,4-트리하이드록시벤젠</u>	<u>533-73-3</u>	
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